

의안번호	2200423
의 퇴 인	한정애의원
회 답 일	2024.6.17.
추 계 번호	24B0293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	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를 받은 경우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(이하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함(제1항) 2. 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. 다만,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76조(지급 기간 등)제1항제2호 신설	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2.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 기간. 다만,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(60일을 한도로 한다)로 한정함	의무규정
3	안 제76조의2(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)	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, 유산·사산휴가기간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입양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2	안 제76조(지급 기간 등)제1항제1호 신설	
3	안 제76조의2(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입양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 -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0421호)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, 이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입양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입양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 - 개정안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입양휴가 급여의 ①지원단가 및 ②지원기간과 ③수급자 수를 추정하여야 함
 - (지원단가) 개정안은 입양휴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이 중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월 210만원이고, 우선지원대상기업의 2024년 예산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단가는 208만원임
 - (지원기간) 지원기간은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으며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,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60일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입양휴가급여의 지급기간

(단위: 일)

	입양휴가 기간	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간
우선지원대상기업	120	120
대규모기업	120	60

자료: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수급자 수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입양을 한 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
- 우리나라의 입양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229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국내로 입양된 경우가 150명, 국외로 입양된 경우가 79명으로 나타남
-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음

[표 2] 국내외 입양현황

(단위: 명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국내	387	260	226	182	150
국외	317	232	189	142	79
합계	704	492	415	324	229

자료: 통계청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